**응용 S/W 개발 서비스 계약서**

**계약 정보**

* 계약명 : 국내외 기업간 특정 매칭 정보 웹 서비스 개발
* 계약 기간: 1차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으로부터 40일간(업무기간 30일 + 최종검수기간 10일)
* 계약 대금: [price]원 (원천세 3.3% 포함)
* 클라이언트: [client](이하 "클라이언트")
* 파트너: [partner](이하 "파트너")
* 계약 체결일: [date]

**계약 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에게 결과물(제4조 제2항에서 정의함)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고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 게 납품하며, 상호의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효력)**

1. 본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호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함과 동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동일.)으로 합의한 사항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본 계약 체결일 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본 계약이 그에 우선합니다.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 진행하며 본 계약서의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클라이언트"가 1차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으로부터 40일 입니다. 단, 계 약 기간 내에 제4조(업무의 내역)에 명시된 업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파트너"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계약 기간 은 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제 2 장 용역계약**

**제4조 (업무의 내역)**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는 관련 기술과 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클라이언트"는 업무 범위를 신속•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공동 업무와 각자 분담해야 하는 업무가 구별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업무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가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 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업무 개요

a. 국내외 기업간 특정 매칭 정보 웹 서비스 개발

B. 업무 범위

a. 필요 요소

(1). 웹 프런트엔드 개발(기존 개발된 서버 데이터 연동)

(2). 개발산출물로서 소스코드 제공

b. 업무 일정

1. 업무일정 : 2018. 06. 27 - 2018. 08. 05

1. 업무 협의

1. 업무 상세 확정

2. 프로그램 개발

1. 웹 프런트엔드 개발

c. "클라이언트" 제공

1. 사용자 화면 기획안(스토리보드)

2. 웹 퍼블리싱 html 파일

4. 기존 개발된 서버의 API 문서 및 상세한 문의 응대

d. 이 외 업무 진행 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서면으로 합의 한 사항

C. 개발 및 지원 환경

a. 개발 및 지원 환경

i. 개발 언어 : PHP, HTML, CSS, JavaScript, JQuery

b. 지원 환경

i. 지원 환경 : Windows Vista 이상에서의 Chrome (67.0.X 버전 이상), Internet Explorer (11 버전 이상) 사용 환경

\* 2018년 06월 27일 기준의 최신 버전까지

ii. 지원 디바이스 : 위 브라우져를 사용하는 정보처리기기

c. 이 외 업무 진행 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서면으로 합의

D. 결과물

a. 개발 산출물 일체

1. 원본 소스 코드

1. "파트너"는 업무 진행에 필요한 소스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상용 소스, 오픈 소스 등 별도 라이센스 정책이 있는 소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9조의 지식재산권 양도가 불가한 경우 이는 "파트너"의 귀책으로 합니다. "파트 너"는 결과물("클라이언트"가 제공한 부분을 제외함)이 제3자의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소가 제기되는 경우 "파트너"가 "파트너"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제4조, 2. B. a. 에서 명시된 ‘클라이언트 측이 제공할 기획문서’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및 UI를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산업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발생하는 제3자의 소에 대해서는 서는 ‘클라이언트’가 이를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계약의 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로 한다.
2. "파트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5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업무 내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당해 업무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검수 의무가 없음은 물론 대금 지급 의무도 부 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검수)**

1. "클라이언트"는 "파트너"가 결과물을 전달한 날부터 제14조(결제 및 지급 조건)의 각 검수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의한 검수기준에 따라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서면 합의 없이 검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클라이언트"는 결과물에서 제11조(하자보수)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의 사항을 서면으로 "파트너"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4조(결제 및 지급 조건)의 각 검수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수령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 이의 없이 검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원활한 검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파트너"는 결과물 전달(검수 요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내부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검수 기준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제7조 (소통의무)**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상호 원활히 소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1일 이내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2.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와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3. 업무 개시를 위한 시작 시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4.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주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업무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전달 합니다.
5. 오프라인 회의는 "클라이언트"의 소재지 또는 상호 합의된 별도의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제8조 (금지행위)**

"클라이언트"는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B. 결과물을 "파트너"에게 반품하는 행위

C.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9조 (지식재산권 등)**

1.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양도합니다.
2.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의사표시는 제14조(결제 및 지급 조건)의 각 지급승인 및 대금 수령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지식재산권의 양도 없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약 대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 습니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 확히 하면, 당사자가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통보하면서 일정 기한을 정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본 항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1조 (하자보수)**

1. "파트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결과물에 발생 또는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무상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파트너"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물 내의 오작동, 미작동, 오•탈자 또는 본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을 "파트너"와 협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하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본 조 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하자보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자보수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제12조(유지보수) 에 의합니다.
   1.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2.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3. 기능 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작성 에러 수정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3.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입니다.

**제12조 (유지보수)**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제11조(하자보수) 상 "하자" 범위 외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파트너’ 측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유지 보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변경, 삭제 등의 기능개선

a.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b. 성능 및 사용방법의 개선

c. 관련 법규 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보완

d.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e.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후의 하자 보수

B. 기능개선에 따른 형상관리 시행(이력관리)

C. 기능개선에 따른 문서작성 및 보완

D. 인프라스트럭쳐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제13조 (비밀유지)**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 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결제 및 지급 조건)**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상 명의로 결제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결제 및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기재 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또 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1차 결제일이 아래 일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일자가 변동됩니다.
   1. "클라이언트"의 1차 결제

a. 결제일: 2018년 06월 27일

b. 결제 대금: 1,000,000원 (원천세 3.3% 제외)

B.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검수

a. 2차 업무(최종 검수)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2018년 07월 25일에 업무를 완료하여 10일간 검수를 진행.

C. "클라이언트"의 2차 결제

* + - 1. 결제일: 2018년 08월 05일
      2. 결제대금: 2,000,000원 (원천세 3.3% 제외)
      3. 지급일: 2018년 08월 05일

1. 대금 수령: 계약된 명의상의 계좌로만 대금 수령 가능
2. 지급 조건

a. "클라이언트"가 제6조(검수)에 따라 최종 검수 완료

**제15조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 업무 완료일이 초과하여 이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파트너"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 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파트너"가 업무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업무 완료 일자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 에 대하여 총 계약 대금(공급가액기준)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 합니다.
2. 기성 부분에 대한 검수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단, 기성 부분의 검수는 업무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합니다.
3. 상기 항의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검수 결과에 따라 "파트너"가 본 계약상 업무의 내역대로 수행되 지 않은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데 소요된 일자는 지체일 수에 포함합니다.
4.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 등 업무 지연, 결제 지연, 검수 지연, 지급 승인 지연 등으로 지체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상기 지연 기간의 2배수 만큼 "파트너"의 지체일수가 차감됩니다.
5. D호의 경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산정은 A.호 및 B.호를 준용합니다.

**제16조 (대금의 환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간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수령한 대금을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계약 명의와 환불 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기타**

**제17조 (소개 자료 활용)**

“파트너”는 제13조(비밀유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파트너"가 전달한 최종 결과물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검수를 마치고 제14조(결제 및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때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19조 (해제 또는 해지)**

1.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6. “클라이언트”가 각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대금을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결제하지 않고, “파트너”가 7일 의 기간을 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결제를 최고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클라이언트”가 결제를 하지 않 는 경우
7.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8.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0.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파트너”의 업무 수행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1.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12. “파트너”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3.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사전 양해 없이 3영업일 이상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응답이 없는 경우
14.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5. 상기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6.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 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7.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계약체결 후 업무 착수 전 본조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 방에게 계약 대금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본조의 사유로 또는 업무 착수 이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손해배상)에 따릅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제4조(업무의 내역) 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업무 지연과 불성실에 책임져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업무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과물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제6조(검수)에 따라 검수를 완료한 결과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클라이언트”가 부담합니다. 단, 제3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파트너”가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작한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재업무 등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소요될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자의 부담으로 하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와 “파트너”가 협의하여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5.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 재로 해결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클라이언트**

상호 및 대표자명: ㈜앱플러

사업자등록번호: (인)

소재지:

**파트너**

대표자명: 피클코드, 대표 함의진

주민등록번호: 950503-1\*\*\*\*\*\*\* (인)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하곡길 2-9